

협회 업무 소개

건축사업부 · 토목사업부

건축사업부 담당 : 부장 이대원(02-3485-5881)

토목사업부 담당 : 부장 박제영(02-3485-5930)

■ 안전진단

▶ 안전점검

- 법적근거 :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, 제7조
- 대 상 : 동법 제2조에 의한 1,2종 시설물
 - 정기점검 : 반기별 2회
 - 정밀점검 : 2년 1회 이상(건축물 3년마다, 수중항만시설 4년마다)

▶ 초기점검

- 법적근거 : 영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영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
- 과업범위 : -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 사항을 파악한다.
 - 향후의 점검 · 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설정
 -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

▶ 대형공사의 정기안전점검

- 법적근거 :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,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
- 대 상 :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
 -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의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
 - 공사목적물의 품질,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
 -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

▶ 정밀안전진단

- 법적근거 :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, 제7조

- 대 상 : 공사완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1종 시설물
 - 정밀점검결과와 정밀안전진단 판정시
 - 리모델링 시행시 공사착수 전 안전진단
 -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, 항만, 수리시설의 안전진단

▶ 재건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진단

- 법적근거 :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/ 동시행령 제42조의 2, 제44조 / 동시행규칙 제32조의 2
- 대 상 : 재건축을 위한 노후불량주택

▶ 공동주택 하자진단

- 법적근거 :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/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3 / 동시행규칙 제11조의 2
- 대 상 : 1, 2종 시설물을 제외한 공동주택

특수 안전진단 및 감정업무

담당 : 부장 이대원(02-3485-5881)

▶ 주요업무

-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
- 건축물 화재진단
- 건축물 하자진단
- 공동주택 소송 대응
- 건축물 피해진단
- 공동주택 하자진단
- 공동주택 법원감정서 대응 보고서

기술지도부 업무 안내

담당 : 부장 원지영(02-3485-5942)

▶ 재해예방 기술지도

-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(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)
 -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~120억원 미만의 건축, 플랜트공사(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)
 -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~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)

▶ 기술지도를 체결치 않은 대상사업장의 제재사항

1.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시 : 안전관리비 20% 환수(법 30조 1항)

